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목 차>

1. 자사주 처분 및 자사주 신탁 취득·처분 관련 공시 강화 등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작성자	이름	이상원
	담당부서 (과)	공정시장과		직급	행정사무관
	국장	박민우		연락처	02-2100-2691
	과장	최치연		이메일	fsc0521@mail.g o.kr

2024. 05. 21. 작성

정책책임자 직위

성명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자사주 처분 및 자사주 신탁 취득·처분 관련 공시 강화 등		
	2.규제조문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조 제2호, 제5-2조 제1호 다~바, 제5-2조 제2호 다·마, 제5-2조 제3호, 제5-4조 제1항, 제5-10조 제5항		
	3.위임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3 제4항, 제165조의4 제1항		
	4.유형	강화	5.입법예고	2024.06.04~2024.07.16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input type="checkbox"/> 제3자에 대한 자사주 처분은 신규주주 진입, 유통주식수 증가에 따른 주주가치 희석 등 기존 주주의 권익을 감소 ○ 그러나 관련 '주요사항보고서'(법정공시)에는 간략하고 기계적으로 처분 목적을 서술(예: 시설자금 조달)하는 수준에 그침 <input type="checkbox"/> 자사주 신탁 취득은 직접 취득 대비 공시규제 등이 완화*되어 있어 규제차익이 발생하고 기업들이 신탁 취득방식을 악용할 우려 * 예: 직접취득의 경우 취득예정수량에 미달하여 자사주 취득시 사유서를 제출하고, 1개월 경과 후에야 새로운 자사주 취득이 허용되지만, 신탁취득은 동 제도 부적용		
	7.규제내용	<input type="checkbox"/> 자사주를 처분하는 경우 공시의무를 확대*하고, 신탁으로 취득·처분하는 경우에도 직접 취득·처분하는 경우와 동일 규제 적용 * 처분목적, 처분상대방 선정사유, 일반주주 권익영향 등 구체적 서술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 (피규제집단) 주권상장법인 ○ (이해관계자) 일반투자자 등		
	9.규제목표	<input type="checkbox"/> 자사주 처분에 대한 공시 확대를 통해 기업이 자사주 처분시 기존주주 권익을 감안하도록 유도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11.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자사주 처분시 절차적 투명성 강화에 따른 투자자 보호 효과에 비해 공시내용 추가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낮은 측면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해당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미해당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미설정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 우선허용·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사항 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1조(자기주식취득·처분에 관한 이사회결의 사항) 주권상장법인이 영 제17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이사회결의를 거쳐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취득의 경우 가. ~ 자. (생략)</p> <p>2. 처분의 경우 가. (생략)</p> <p><신설> 나. ~ 산. (생략)</p> <p><신설></p> <p><신설> 아.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p>	<p>제5-1조(자기주식취득·처분에 관한 이사회결의 사항) ----- ----- ----- -----.</p> <p>1. ----- 가. ~ 자. (현행과 같음)</p> <p>2. ----- 가. (현행과 같음)</p> <p><u>나. 처분상대방</u> <u>다. ~ 아. (현행 나목부터 사목까지와 같음)</u> <u>자. 가격 산정근거 및 예상되는 주식가치 희석효과</u> <u>차. 처분 상대방 선정사유</u> <u>카. -----</u> -----</p>
<p>제5-2조(신탁계약에 의한 자기주식취득·처분에 관한 이사회결의 사항) 주권상장법인이 영 제17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이사회결의를 거쳐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신탁계약의 체결의 경우 가. ~ 나. (생략)</p> <p><신설></p> <p><신설></p>	<p>제5-2조(신탁계약에 의한 자기주식취득·처분에 관한 이사회결의 사항) ----- ----- -----.</p> <p>1. 신탁계약의 체결의 경우 가. ~ 나. (현행과 같음)</p> <p><u>다. 주식의 종류 및 수</u> <u>라. 취득하고자 하는 주식의 가격</u></p>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다. ~ 만. (생 략)</p> <p>2. 신탁계약의 해지(일부해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p> <p>가. ~ 나. (생 략)</p> <p><u><신 설></u></p> <p>다. (생 략)</p> <p><u><신 설></u></p> <p>라. ~ 만. (생 략)</p> <p><u><신 설></u></p>	<p><u>마. 취득 후 보유하고자 하는 예 상기간</u></p> <p><u>바. ~ 아. (현행 다목부터 마목 까지와 같음)</u></p> <p>2. ----- -----</p> <p>가. ~ 나. (현행과 같음)</p> <p><u>다. 주식의 종류 및 수</u></p> <p>라. (현행 다목과 같음)</p> <p><u>마. 해지 후 보유하고자 하는 예 상기간</u></p> <p><u>바. ~ 사. (현행 라목부터 마목 까지와 같음)</u></p> <p>3. <u>신탁계약에 의해 자기주식을 처 분하는 경우</u></p> <p><u>가. 처분목적</u></p> <p><u>나. 처분상대방</u></p> <p><u>다. 처분예정금액</u></p> <p><u>라. 주식의 종류 및 수</u></p> <p><u>마. 처분하고자 하는 주식의 가격</u></p> <p><u>바. 처분방법</u></p> <p><u>사. 처분하고자 하는 기간</u></p> <p><u>아. 처분을 위탁할 신탁업자의 명 칭</u></p> <p><u>자. 가격 산정근거 및 예상되는 주 식가치 희석효과</u></p> <p><u>차. 처분 상대방 선정사유</u></p> <p><u>카.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u></p>

I. 규제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제3자에 대한 자사주 처분은 신규주주 진입, 유통주식수 증가에 따른 주주가치 희석 등 기존 주주의 권익을 감소
 - 그러나 관련 '주요사항보고서'(법정공시)에는 간략하고 기계적으로 처분 목적을 서술(예: 시설자금 조달)하는 수준에 그침
- 자사주 신탁 취득은 직접 취득 대비 공시규제 등이 완화되어 있어 규제차익이 발생하고 기업들이 신탁 취득방식을 악용할 유인 우려
 - 신탁계약 관련 공시사항이 직접 취득·처분 대비 간소하여 투자자가 기업의 자사주 관리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움
 - 직접취득은 취득예정수량에 미달시 사유서를 제출 후 1개월이 지나야 신규 취득이 허용되지만, 신탁취득은 동 규제('패널티')가 미적용*

* 취득 강제성이 없어 신탁취득 공시 후 실제로는 자사주를 취득하지 않을 위험 존재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자사주를 처분하는 경우 공시의무를 확대*하고, 신탁으로 취득·처분하는 경우에도 직접 취득·처분과 동일 규제**적용

* (예) 처분목적, 처분상대방 선정사유, 일반주주 권익영향 등 구체적 서술

** ① 주요사항보고서(자사주 직접취득 또는 처분/신탁계약 체결·해지, 신탁계약 중 처분) 기재항목을 동등한 수준으로 규율

② 신탁도 당초 공시된 자사주 신탁계약금액에 취득금액이 미달한 상태로 해지할 경우 직접취득과 동일한 패널티(사유서 제출, 취득금액이 당초 공시금액 미만인 경우 새로운 신탁계약 체결은 1개월 경과 후 허용) 부과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상장회사, 일반투자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개선 세미나」 개최(23.6.5, 부위원장 주재) ② 「주권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개선 방안」 발표·간담회 개최(24.1.30, 부위원장 주재) ③ 관계기관 및 시장참가자 등의 의견을 수렴(실무회의) 		

3. 규제목표

- 자사주 취득·보유·처분 순 과정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여 기존주주 권익 보호 및 시장 예측가능성 제고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기존주주 권익 보호와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부여된 규제로서,
 - 편익이 주요사항보고서(자사주 처분, 신탁 처분 등) 공시 확대 관련 절차적 비용 대비 크다고 추정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사항 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사항 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사항 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사항 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해당사항 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사항 없음

- 일몰설정 여부

해당사항 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해당사항 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 일본의 경우 제3자 등에게 자사주 처분시 처분목적, 처분상대방 선정사유, 향후전망 등에 대해 설명식으로 상세하게 서술
- 자사주 신탁취득은 국내 고유의 제도로 해외사례를 찾기 어려움

○ 타법사례

해당없음

Ⅲ. 규제 의 실효성

1. 규제 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자기주식 취득·보유·처분에 대한 공시 강화 등 간접규제가 주요내용으로 규제이행에 따른 부담이 크지 않아 피규제자 준수가능성이 높음

2. 규제 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 기존 공시 관련 절차에 공시내용이 확대된 것으로 쉽게 확인 가능해 규제 집행가능성에 문제는 없음

○ 재정적 집행가능성

해당사항 없음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23.6월 「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개선 세미나」, '24.1월 「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개선 간담회」 등을 통해,
 - 전문가, 기업, 투자자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여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 발표(24.1.30일)

2. 향후 평가계획

- 시행 이후 금융감독원 검사 등을 통해 의무 이행상황 모니터링

3. 종합결론

- 자사주 취득·보유·처분 쉐 과정에 대한 공시 강화를 통해 기존주주 권익 보호 및 시장 예측가능성 제고 기대